

파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415
----------	-----------

제안년월일 : 1998년 11월 11일

제안자 :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1. 제안이유

규제개혁위원회 구성이 위원장을 2인으로 하고 있는 바 각기 그 기능과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도록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토록 함.(안제4조)

파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

파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제4조제1항중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를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로 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원 안	수 정 안	비 고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생략)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 -----, ② (원안과 같음)	